

국제법의 쟁점과 전망

문준조*

차 례

- I. 서 론
- II. 국제협력분야의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 1.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
 - 2.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국제법
- III. 남북한간의 관계와 국제법
 - 1. 북한주민의 국내법상의 지위
 - 2. 남북한 평화정착과 국제법
 - 3. 남북한 경제교류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 IV.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제법적 쟁점
 - 1. 의 의
 - 2.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FTA
 - 3. 개성공단 조항
- V. 결 론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활발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국제법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주요 국제법 분야 중에서 특히 최근에 국제법상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전망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국제협력관련 분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과 관련된 문제와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국제법상의 쟁점 중에서 북한주민의 지위,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관련된 국제법 문제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국제경제교류분야로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II. 국제협력분야의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난민관련 조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두게 된 것은 1993년 12월 10일의 개정에서이며 그 후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몇 차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난민과 관련하여 국내에 비호를 요청한 난민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내법도 공백상태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구체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되어왔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조차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최소한 관련조문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2항 제4호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받

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체류자격)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의 2(난민임시상륙허가) 제1항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정한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¹⁾ 제18조는 외국인이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제16조 2항에서 난민의 정의와 난민의 임시상륙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우는 임시상륙허가와 여행증명서 발급만이 전부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7에서 보듯이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제도 자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외국인 체류자격 별표란에는 난민 자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하다면 제76조의 7 등에서 언급한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는 대한민국내에서의 입국·체류목적에 정한 체류자격의 구분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취업허가를 받고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 자체가 허용된다는 근거조항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제16조의 2의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

1) 다만,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보아 현실적으로도 “...생명 등을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할 수 있겠는가는 회의적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의 별표가 정한 각종 체류자격의 구분에서 난민의 체류자격은 빠져 있다. 굳이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A-3협정” 체류자격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각종 조항에서 난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 즉, 난민의 국내에서의 일정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소 등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 제76조 제2항은 난민자격의 인정을 위한 신청은 상륙 또는 입국날(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가 신설될 당시에는 60일 이내로 하였던 것을 1년 이내로 한 것은 큰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난민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난민체류자격 자체가 없는 현행 대통령의 규정으로 보아서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가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는가 또한 그러한 체류자격없이 입국하였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영역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달라진다는 기묘한 현상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어떠한 체류

2) 법 제61조 제1항과 그에 근거한 대통령령 제76조의 체류허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것들이다. 제61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난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난민신청을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난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통령령 제76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에서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큰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자격 없이 입국한 난민이 대한민국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러한 자들의 경우에는 수용소에서의 보호 밖에 별다른 처우 방법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난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의 영위 또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는 적어도 우리 법령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제64조는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은 난민에 대하여는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한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박해받는 곳으로의 송환금지원칙”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러한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를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해받는 곳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 제64조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이 오히려 예외가 되고 단서의 내용이 현실적인 관행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상기의 “박해받는 곳으로의 송환금지원칙”이 강행규범적 성격의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기 제64조 단서조항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³⁾ 그러나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도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유보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제8장의 2(난민의 인정 등)에서는 난민의 인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제8장 제76조 2(난민의 인정)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

3) 이러한 non-refoulement 원칙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 원칙이 널리 존중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의 국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Liza Schuster, *The Use and Abuse of Political Asylum in Britain and Germany*, (Frank Cass, 2003), p.107.

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74조의 4(이의신청)에서는 제76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가 제76조의 3에 의하여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상기 제76조의 2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법무부장관이 - 외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있을 수 있으나 - 난민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는⁴⁾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소송은 적법성만을 따지는 권리구제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상기 제76조 4의 규정이 우리 법체계상으로 볼 때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어떠한 법령에서도 난민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그 관행도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국제법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에는 등록외국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 역시 이미 수백만에 달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적 이동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범죄의

4) 朴松圭, 『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11면.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국제적 조직화 현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제도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래 범죄인인도는 인도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한다는 공통의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협력행위를 의미하며 범죄인인도외에 이른바 협의의 사법공조, 즉 ‘증인과 감정인이 신문, 증거물의 인도, 수색·압수 및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가간의 공조’외에도 ‘형사판결의 집행에 대한 사법공조’와 ‘형사절차의 이송에 대한 사법’ 공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에만 한정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⁵⁾

한편,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1988년 8월 15일 공포·시행; 법률 제4,015호)에 따르면 인도범죄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이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는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포함하여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정치범불인도, 임의 인도거절 사유등이 포함되어 있다. ⁶⁾ 범죄인인도법외에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으며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국들간이 수형자 이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⁷⁾ 그러나,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외

5) 허일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2005, 48면.

6) 한국에서 범죄인인도인도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84년 최현동 암살리상 살해사건이다. 2인이 범인중 홍콩으로 도주한 1인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다.

7)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1990년 12월 14일에는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모델조약 및 형사소추의 이송에 관한 모델조약, 형의 유예자 및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의 이송에 관한 조약 모델을 의결한 바 있다.

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의 이송 등 새로운 형태의 사법공조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형사사법공조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⁸⁾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17개국이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22개국이다. 국가간의 상호의존성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범죄도 국제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가들과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사법처리 실적, 특히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한 국내송환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가 국제적인 확산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의 법률체계상이 차이 및 전문인력의 부족외에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관계서류를 전달하고 있어 비교적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교류도 활발한 한·중·일 3국간의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3국간의 사법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근대화이후 서로 발전해온 역사의 차이로 인하여 법률문화, 법의식, 법률제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단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공조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Ⅲ. 남북한간의 관계와 국제법

1. 북한주민의 국내법상의 지위

우리나라 국적법 제2조는 1948년 12월 20일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이전에 출생한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흠결을 초래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즉,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무효이므로 1910

8) 허일태, 전계논문, 54면.

년 이후 한국인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의 시점이전에 출생한 자는 당연히 父가 한국이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이 독일인의 개념을 1937년 12월 31일 당시 독일 제국 영역에 편입되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에 독일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독일 국적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를 들어, 한국 국적법의 관련 규정을 비판하기도 한다.⁹⁾ 그런데, 우선,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보다 원천적인 법률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일본호적을 이탈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조선국적인으로 간주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38선 이남의 남부조선을 통치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국적법 제2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사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무엇이었던간에 적어도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국적법의 대한 비판논리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제헌헌법 제100조도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조선인이라 함은 대한제국 말기에 민적에 기재되었으나 1923년 이후 이를 대체한 조선훈적령에 입적한 자를 말하며 동 조선훈적 입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도¹⁰⁾ 타당하다고 본다. 사실 국적법이 시행된후 이미 6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국적법 제2조의 규정에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아래에서는 북한주민이 국적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96년 11월 12일자 이영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바,¹¹⁾ 이는 북한의 국가로서의 지위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9) 이주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法學研究』, 제29권, 2008, 35면.

10)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1998, 241-345면.

11)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 1211 판결.

우리 헌법의 규정에 집착한 것으로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주변국가의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상황, 그 동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외에도 미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며,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관계개선에 따라서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판례는 최소한 현재의 상황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시각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의 국민으로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관할권내로 들어오는 경우 법률상·사실상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자는 견해도¹²⁾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국민이나 법률상의 국민이라는 개념은 국제법과 국내법에는 이론적으로나 국가의 관행으로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물론 그 동안 국제법이 분단국의 문제를 등한시하여온 측면도 있어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설령 북한주민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는 북한의 국적이 인정되는 모순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이 법적 지위를 헌법의 영토조항과 남북간의 특수관계론은 조화시켜 대한민국 국적의 하위개념으로 南韓籍과 北韓籍을 사용하자는 방안도¹³⁾ 제기되었으나, 그러한 국적의 하위개념은 국적의 문제와는 다소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적의 하위개념으로서의 南韓籍과 北韓籍은 호적법상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적법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2. 남북한 평화정착과 국제법

12)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163-164면.

13)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02, 31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5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간에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¹⁴⁾ 체결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전쟁종결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상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없지 아니하지만 북한으로서서는 반드시 적어도 보다 확실하게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70년대 중반이후에는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통한 평화협정의 체결 및 한국과의 불가침선언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후 1992년 2월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남북한 쌍방이 불가침을 약속하게 됨에 따라,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여기고 있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으로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즉, 한국전쟁후의 정전협정이라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하루 빨리 벗어나서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부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¹⁵⁾. 북한이 주장하는 3자회담의 의미와 관련하여 북한이 한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논리로 한국을 배제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적인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⁶⁾. 또한 북한은 자신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은 미국의 위

14) 평화협정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제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화조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15) 2005년 5월 12일 한성렬 유엔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새로운 체제, 즉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그 조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시사했다.

16) 1994년 5월 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 체결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였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협 때문이며¹⁷⁾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말 유럽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 동서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독일통일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¹⁸⁾.

다만, 대한민국의 입장은 1992년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제5조)와 화해부속합의서(제18,19조)에 규정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간에 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미국과 중국외에 일본이나 러시아 등 한반도의 평화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남북한 평화협정을 보장하고 한시적인 평화관리기구의 참여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연합 등이 평화정착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 협상 방식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등 갈 길이 험하고 멀기만 하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상,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평화협상 등 어느 방안도 간단치 않다. 최근, 북한과 미국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조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는 지난 2005년 베이징 9·19공동성명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협정의 타결은 협상대상이 되는 문제의 해결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3. 남북한 경제교류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17) 북한은 2002년 2차 핵위기 발생이후 자신들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북한간의 불가침 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제기하여 왔다.

18) 90년대 초의 제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대미평화협정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협상의 최종단계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네바 합의에는 평화체제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평화체제전환과 북핵문제해결을 연계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문제의 핵심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고 다른 반대급부를 최대한 확보하는 협상의 측면지원적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WTO체제상의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의 최혜국대우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¹⁹⁾ 남한과 북한이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한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FTA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별개의 국가로서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면에서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인정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WTO회원국들 역시 남북한 무역거래를 국가간의 무역거래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²⁰⁾

WTO체제에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가 남북한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1조는 WTO회원국이 WTO회원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다른 WTO 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남한은 관련 국내법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남한이 부여한 특혜는 다른 WTO회원국의 동종 상품에게 조건없이 즉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GATT 제1조의 내용이다.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북한이 GATT 제1조상의 ‘외국’ (any other country) 이 아니라는 점이다.²¹⁾ 남북합의서에서는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

19) 중국의 본토와, 홍콩, 마카오간의 FTA 체결의 정당성은 남북한간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蔡宏明, “CEPA實施後對兩岸四地經貿未來發展之可能影響”, 『經濟情勢及評論』, 2003年 12月, p.28.

20) 많은 국가들이 국내산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원산지 규칙을 좁게 창출해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Am.J.Int’l L.*, Vol.90(1996), p.625.

21) GATT 제1조가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적용되는데,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외국이

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남북쌍방이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남북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²²⁾

더욱이, GATT 제1조의 적용을 위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국가로서 외국이나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WTO에서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²³⁾ (customs territory)과 ‘국가’²⁴⁾ (country; State)를 분별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관세영역도 WTO의 회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서로 다른 관세 및 통상 규정을 유지하고 통상관계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의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WTO법상 적어도 별도의 관세영역의 관계가 된다.²⁶⁾

남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합의서를 채택, 1992년 2월 19일 발효하였는 바,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규정하고²⁷⁾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²⁸⁾ ‘이러한 물자교류’는 남북한간 무역거래가 국가간의 무역이 아님을 의미한다.²⁹⁾ 1992년 9월 채택

아니므로 남북한 무역거래에 GATT 제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남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남북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국토통일원, 1989, 247-248면.

22)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41면.

23) FTA는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관세영역을 ‘통상관계 등의 수행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한’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GATT XII:1조. 또한 GATT에서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관세 또는 다른 통상규정’(separate tariffs or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GATT XXIV:2조).

24) GATT XII:1조; GATT I:1조.

25) 홍콩과 같은 국가가 아닌 실체도 WTO 회원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통합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EC)는 개별적으로 WTO회원국인 유럽국가들로 구성되며, WTO의 창립 회원국이다(GATT XI:1조).

26)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간의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영국의 관할 아래에 있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중국과는 별개로 여전히 WTO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洪財隆, “『中國與東協自由貿易協定』의來龍去脈與政經效應”, □□APEC2004 議題論叢□□, 2005年 3月(台灣經濟研究院), p.61.

27)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28) 남북기본합의서 15조.

된 남북합의서의 『교류협력부속합의서』(이하 ‘교류합의서’라 함)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정 95.1.3 법률 제4858호)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제1조)이라 할 수 있다. 이 법 제5조(민족내부거래)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동법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항도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원래 외국과의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뿐만 아니라 동조 제4항은 동 법에 의하여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도 관세법

29) 동조항의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는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라고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Economic Planning Boar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January 1993), p.20.;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국내 문제를 의미하는 ‘domes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비록 남북한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가까운 특별한 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상호간에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제1조), 또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제2조).

적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2월 16일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협상과정에서도 당초 우리 정부는 ‘내국민 대우 조항’을 넣으려고 했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할 경우 북측의 계획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최혜국 대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상대방 투자자의 대우에 관한 제3조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제3조 제2항에서는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을 보면, 남북간의 투자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에 의거한 그 나라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 등이 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민족내부거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8조는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제8조는 결정적으로 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민족내부거래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남북간의 각종 합의서는 국제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련 국내법의 제정·이행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³⁰⁾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밝히고 있

30) 2005년 12월 20일 제정(법률 제7763호).

으며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을 두개의 국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하여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조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도 민족내부거래성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³¹⁾ 제11조는 정부는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IV.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제법적 쟁점

1. 의 의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는 국제적인 분업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국부와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두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 제도를 상호 철폐·자유화하고 서비스시장 등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어떠한 FTA가 체결된 경우 비당사국은 당사국과의 무역에서 역내 당사국간의 무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바,³²⁾ 이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31) 2007년 5월 25일 제정(법률 제8484호).

32) 지역적 무역블록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주의는 그 자체 성격으로 볼 때 비참여국들에게는 차별적인 것이며 상호주의적인 무역상의 우대조치가 오직 참여국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WTO체제상의 자유무역 및 무차별원칙에 반하는 것이

WTO 체제내에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 할 수 있다.³³⁾ 이러한 상호모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0년대말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FTA를 통한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블럭이 급속히 확대되어 세계무역의 70%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루어질 정도로 FTA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다.³⁴⁾ 현재,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국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FTA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이어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은 2007년 6월부터, 필리핀은 2008년 1월, 브루나이 7월, 라오스 10월 등 8개국은 이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10월 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11월부터는 아세안 9개국에 대한 무역협정 발효가 완료될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포함이 안된 태국은 2007년 12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공식 서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2007년 11월 21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분야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다. 2007년 6월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서

다.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p.301.

33) 세계화시대에 지역적 무역협정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WTO의 보편주의적 무역질서가 원칙이고 지역적 무역협정은 예외일 뿐이라는 WTO와 지역적 무역협정의 관계의 설정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Zakir Hafez, “Weak Discipline: GATT Article XXIV And The Emerging WTO Jurisprudence on RTAs”, *N. Dak. L. Rev.*, Vol.79(2003), p.879.

34) 지역적 블록화는 최근에 들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주의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지역적 무역협정은 무역과 통화 블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블럭 밖의 비참여국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Ibid.*, p.302.

명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국내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인 상호간의 무역의존성도 높지만 일본 및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3개의 북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간의 무역의존성이 대단히 높으며 3국간의 밀접한 경제적 통합은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 무역과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3국의 수출구조는 점점 유사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시장에서의 3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3국은 각기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며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상당한 수직적 분화(vertical differentiation)가 형성되어 있고 3국간의 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일본 및 중국간의 FTA는 유럽연합 및 NAFTA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FTA

(1) 한·일 FTA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우위를 중국에게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ASEAN과의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및 ASEAN과의 FTA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한국과 일본은 FTA의 장점을 서로 인식하고 1998년부터 양국간의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2002년 3월 22일 한국·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한 『한국·일본 FTA 산관학공동연구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일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를, 한국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 제거로 인한 수출 증대를 FTA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사업이전과 투자 활성화

까지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본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한국의 후생수준 및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게 되고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한국·일본 FTA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기적으로 한국·일본 FTA 체결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향상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도 보완장치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수입수량할당제(import quota: IQ)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IQ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므로 WTO정신에도 부합되며 IQ를 철폐한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⁵⁾

한국·일본 FTA 추진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 FTA협상에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함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괄한다. 즉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무역자유화를 보완, 촉진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한다. 관세 철폐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시장을 상호개방하며,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한 차원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FTA를 추진한다. 셋째, WTO규범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개방된 FTA를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ATT 제24조 규정과 현행 WTO/DDA논의에 부합, 역외국가에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FTA,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의 기준을 지향한다. 넷째,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FTA를 추진한다. 무역자유화를 넘어서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 충격

35)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품 소재 산업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국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인 또는 경공업에의 극단적인 의존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쟁력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개선을 얻게 될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한국의 산업구조와 무역수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상기 공동연구에 의하면 일본과의 FTA로 혜택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일본간의 FTA는 농산품에 관한 문제로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며 FTA로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부문들과 농업부문 등이 그 체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되도록 추진하고 양국간 FTA로 인한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에 개최된 FTA체결협상 첫 회합에서 2005년까지의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간의 FTA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확대, WTO와의 정합성, 포괄적인 FTA체결을 추구한다는 4대원칙을 책정하였다. 또한, 협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원칙/분쟁해결, 상품무역(관세, 무역구제조치 등), 비관세조치/SPS/TBT, 서비스무역 및 투자(금융, 전기통신 등의 서비스, 인적 이동), 기타 무역관련사항(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양국간 협력(무역투자촉진, 중소기업 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후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2회 협상에서 상호승인분야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같은해 4월에 열린 제3회 협상에서부터는 총7개 분야에 걸쳐서, 상품양허안을 제외한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8월, 9월경에는 상품양허안을 교환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열린 제5회 협상에서 한국측은 국내에서 대일무역적자 확대 및 국내기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일본과의 FTA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 및 상관행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 정부조달의 투명성 향상, 상호인증, 단기체제비자의 면제, 김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당제도의 대폭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6회 협상에서도 7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협상에 있어서 핵심부분인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양허안의 교환 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허안의 제출시기를 계속 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쳐, 한국·일본 양국간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일본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및 서비스 시장 자유화, 기술 장벽 및 위생 조치 등, 인적교류,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으로 추구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하였다. 그

리고 양국 무역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 무역구조 및 분야별 관세철폐 방안 등 관세 양허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왔다.³⁶⁾ 더불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 방안과 양국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절차의 개선, 전자 무역거래(paperless trading)추진 방안도 협의의 대상이다.³⁷⁾

그러나, 한국과 일본간의 FTA체결협상은 현재까지도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의 진행방법에 대한 입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상호간에 양허안의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광공업품의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자의 자유화/투명성 확보, 지적재산 등의 분야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현행 평균관세율(9.2%)이 일본(2.7%)보다 높은 관계로, 관세철폐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품목의 자유화제안 수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농림수산물품의 관세철폐, 수산물 수입쿼터(IQ)의 철폐, 비관세조치, 상호승인, 정부조달, 항구적 사증면제의 조문화 등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수산물 수입쿼터제도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WTO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라고 주장해 왔고,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민간의 상관행

36) 일-싱가포르 EPA는 NAFTA보다 훨씬 광범위한 경제연계협정이지만 일·싱 양국간의 무역에는 농업이 커다란 무역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농수산물중 무관세 품목에 대해서만 자유화 대상품목으로 한정시켜 실질적으로 일본의 민감분야를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국·일본 양국간 무역에서는 농수산물 무역의 비중이 커서 관세철폐에서 이를 제외하면 WTO 규정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양국의 취약한 분야는 비켜나가 포괄적인 FTA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서의 의의를 무색하게 할 것이다.

37) 유통, 투자, 환경, 인력이동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진입장벽이 제거될 것이며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 등 수출입 관련 제도도 상호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부처별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방 요구안 마련 양허방식과 관련, 허용분야 열거방식(Positive list)과 금지분야 열거방식(Negative list)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최혜국 대우 부여문제, 전자상거래 포함 문제 검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2004년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세계총상품거래의 8.7%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 (2004), p.750.

까지 규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항구적 사증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중이지만, 이 문제는 어찌되었건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한국·일본FTA의 논의에 있어서 한국산업의 최대관건은 대일수출증대 및 대한직접투자의 확대여부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은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 및 향후 한국에서의 투자전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일본FTA 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협정문안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한·중 FTA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서 미국을 앞질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투자의 3분의 1이상이 중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³⁸⁾ 양국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FTA의 체결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고 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2005년 3월부터 양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³⁹⁾ 그러나, 양국간의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의존성으로 인한 FTA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아직 이 문제에 관한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은 FTA가 세계 최대 농업인구를 가진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유입으로 취약한 농업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회사들이 FTA에 의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더 큰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한국 전자제품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말 FTA 추진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

38) Joon-Kyung Kim/Yangseon Kim/Chung H. Lee,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orking Paper 2006-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6. 9), p. 2.

39)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nefits All(1)", *China Daily*(2005-03-30). http://english.china.com/zn_cn/business/news/11021613/20050330/12206606.html.

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 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⁴⁰⁾ 첫째, 한국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입관세의 27종 가운데 농산품과 경공업상품 중 17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한국내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국 상품으로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과 식품첨가제, 의약과 의약품 등이며, 위생검역 조치를 수단으로 이상의 상품에 수입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동종 상품의 위생검역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와 차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반덤핑문제이다. 2002년 말까지 한국이 중국 상품에 19건의 반덤핑조치를 발동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예전에 반덤핑조치에 피동적이던 것과는 달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가 점점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특히 늘고 있다. 한국이 중국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많은 한국수입상품과 중국 상품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劉晨陽이 지적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와 반덤핑문제는 곧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협상 사안들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양허안에 따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이나,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상품 분야의 기술장벽조치와 위생검역조치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수단들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한-칠레 FTA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40) 劉晨陽, 「中國參與雙邊FTA問題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6), pp.225-226.

Phytosanitary Measures, SPS)조치규정에서는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으나, 농축산물의 수출품목이 있고 또한 그 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FTA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대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규제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중국의 양면 정책은 교역국간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여지를 높이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이 제3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소건 중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제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게 쓸 수단이므로 한중 FTA에서 반덤핑조치는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⁴²⁾

한편, 한·중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한·중 FTA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조항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TRIPS에서 포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싱가포르 FTA에서, 지적재

41) 김창곤·박진근, “중국의 WTO가입 후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무역규제조치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제21권 21호, 2006, 49면.

42) 중국은 FTA에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제한조치, 투자, 경쟁, 서비스무역, 환경과 분쟁해결기제를 FTA의 규율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법률제도 내용으로 보고 있다. 王興和, “构建中國區域貿易一体化自由貿易法律模式初探”,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pp.113-114.

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 양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중국은 지식재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서 저작권 분야는 양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⁴³⁾ 한·중 양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이 체결되었다(2000년 체결).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 확대)에 대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한·중 지역특허청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하고, 3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성공단 조항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EFTA 및 ASEAN과 체결한 FTA들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⁴⁴⁾ 대한민국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3)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미등록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TA상의 보호대상 투자로서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FTA는 그러한 미등록 권리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Carlos M. Correa, "Investment Protection in Bilateral and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 *Mich.J. Int'l L.* Vol.26(2004), p.339.

44) 일부 원산지제도의 복잡성에 주목하여 국가들이 FTA 체결과정에서 협상하는 원산지 규칙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른 바 “개성공단조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며 제4.3조(특정상품의 취급) 1과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부속서 4B에 열거된 상품이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 된다. 그 상품은 이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또한 원산지 재료가 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 및 부속서 4B의 운용 또는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또한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서는 상품목록(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을 열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은 3개월간의 서면 통보로 목록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열거된 상품은 개성공단과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향후 그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조항은 없다. 어떠한 면에서 이는 그 동안의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r)의 설치에 합의하여 제22장의 부속서 22-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의하여 이 위원회가 한국과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⁴⁵⁾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과연 이러한 기준이 순수한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한 기준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proces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r)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p.171.

45) FTA의 기초는 원산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Jeffrey J. Schott,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1989), p.15.

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그 인정여부가 북한의 핵상황 등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것임을 의미한다.⁴⁶⁾ 다시 말해서 국제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⁴⁷⁾ 북한이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조항의 삽입을 외국과의 FTA체결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WTO체제에 참여시키고 남북한이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FTA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⁴⁸⁾

V. 결 론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들을 몇개의 분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았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취업허가를 받고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 자체가 허용된다는 근거조항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난민체류자격 자체가 없는 현행 대통령의 규정으로 보아서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중에서도 그가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는가 또한 그러한 체류자격 없이 입국하였는가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내에서의 활동범위가 달라진다는 기묘한 현상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제64조 제3항은 난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해받는 곳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범죄인인도 및 사범공조 분야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교류도 활발한 한·중·일 3국간의 국제형사사범공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법률문화, 법의식, 법률제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단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공조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일본FTA의 논의에 있어서 한국산업의 최대관건은 대일수출 증

46) 법분야의 정치적 의도의 투입에 대해서는 Louis Henkin,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Value* (Kluwer International, 1995), p.4 참조.

47) 주진열, “남북경제협력의 국제법적 측면: 법과 정치”,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 2008, 30면.

48)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WTO Structure”, *Asian Law Review*, Vol.2(2005), pp.159-152.

대 및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여부이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협정문안의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대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규제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양면 정책은 교역국간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여지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이 제3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소건 중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제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에서 반덤핑조치는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북한, 민족내부거래, 범죄인인도, 국제법

참 고 문 헌

- 김창곤·박진근, “중국의 WTO가입 후 통상정책에 대한 고찰-무역구
제조치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제
21권 21호, 2006.
- 박노형, “남북한 직교역의 GATT체제에서의 문제점”, 국제경제법연구
1992년호, 국제경제법연구회, 1992년.
- 박송규, 『행정심판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헌법학연구
』, 제10권 제2호, 2004.
- 이주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法學研究』, 제
29권, 2008.
-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 구조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
연구 제1권 4호, 국토통일원, 1989.
-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1998.
-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
권 제1호, 2002.
- 주진열, “남북경제협력의 국제법적 측면: 법과 정치”,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 2008.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 허일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비교
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2005.
- 劉晨陽, 『中國參與雙邊FTA問題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6).
- 王興和, “构建中國區域貿易一体化自由貿易區法律模式初探”, 上海大學學
報(社會科學版), 2006.
- 蔡宏明, “CEPA實施後對兩岸四地經貿未來發展之可能影響”, 『經濟情勢
及評論』, 2003年 12月, p.28.

洪財隆, “『中國與東協自由貿易協定』의來龍去脈與政經效應”, 『APEC2004 議題論叢』, 2005年 3月(台灣經濟研究院).

Cheng In Kyo and Cho Jung Ran, “The Analysis of Tariff Concession in the Japan -Singapore FTA and Implications for Korea-Singapore FTA”, *Economy and Trade Study(Kyungshang Nonchong)*, Vol.18, No,2 (2003).

Jeffrey J. Schott,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1989).

Liza Schuster, *The Use and Abuse of Political Asylum in Britain and Germany*, (Frank Cass, 2003).

Louis Henkin,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Value*, (Kluwer International, 1995).

Carlos M. Correa, “Investment Protection in Bilateral and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Granting of Compulsory License”, *Mich.J. Int’l L.* Vol.26(2004).

Joon-Kyung Kim/Yangseon Kim/Chung H. Lee,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orking Paper 2006-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6. 9).

Joseph A. LaNasa III,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Am.J.Int’l L.*, Vol.90(1996).

Lee Dongwook, “Legal Problems of the Two Koreas in the WTO Structure”, *Asian Law Review*, Vol.2(2005).

Mohammad Nsour, “Fundamental Facets of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Beyond”, *Fordham Int’l L.J.* Vol.27 (2004).

Moshe Hirsch, “International Trade Law, Political Economy and

Rules of Origin- A Plea for a Reform of the WTO Regime on Rules of Origin”, *J. World Trade*, Vol.(2002).

Sherrilyn S. Lim,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stering Confidence and Commitment in Asia” *Cal.W. Int’l L. J.* Vol.34(2004).

Zakir Hafez, “Weak Discipline: GATT Article XXIV And The Emerging WTO Jurisprudence on RTAs”, *N. Dak.L.Rev.*, Vol.79(2003).

China Daily (2005-03-30),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nefits All(1)”, http://english.china.com/zn_cn/business/news/11021613/20050330/12206606.html.

Issue and prospect of International Law

Moon, Joon - Jo*

Preferential tariff elimination under a Korea-Japan FTA may worsen Korea's welfare level and trade balance with Japan and also may cause a reduction in the production of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Especially, it will have the worst adverse impacts on the parts and components industries, thereby making the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 labor-oriented one or over-dependent upon the light industries. However, Korea will improve substantially in the long-term if its competitiveness is strengthened with a FTA. Additionally, the grow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into Korea may improve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balance with the world. Currently there are two kinds of obstacles in the Korea-Japan FTA negotiations. First, the affected industries object to, or try to delay the FTA.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and agricultural sectors are among such groups.

As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grows significantly, the both countries find it more and more necessary to form a free trade agreement to strengthe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China's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have been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since March, 2005. Additionally, more than one-thir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has been going to China since 2003. But, while

* Senior Research Fo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 D. in Law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mid rapidly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both governments are still reluctant to launch an official government-level talk on the issue. Korea is concerned that a free trade agreement will cause massive inflows of cheap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possibly hurting the nation's fragile agricultural industry. A free trade agreement would open Korea's market to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agricultural goods, which has the world's biggest agricultural population of 800 million. This would have a huge negative impact on Korea's farming industry.

On the other hand, China has its own concerns. Several high-tech Chinese firms are expected to be threatened by Korean electronics products, which are already of better quality and will have greater price competitiveness once tariffs are removed. Despite such challenges being posed to both countries,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already become an unavoidable issue.

Key Words FTA , North Korea, internal transaction between divided entities, extradition, international law